

企劃·販賣등에 多角 이용

企業의 特許관리는 기업경영에 직결되고, 기업의 業種, 규모의大小에 관계없이 영구적인 기업발전에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또한 기업의 특징을 살린 새기술, 신제품의 개발이 기업발전의 기초가 되는것은 말할것도 없다. 최근 기술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차차 높아져 기술개발을 기업경영의 전략으로 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기업은 특허제도를 이용해서 발명한 기술을 권리로서 보호를 요구하고 주어진 특점을 이익보호의 수단으로 하고 있다. 이와함께 공개된 특허정보를 기업경영의 자료로 다각적인 이용을 폐하고 있다. 결국 특허관리는 기업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이런것은 地域 산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중소기업에 있어서의 특허제도의 활용은 기업경영의 수단으로 큰 가치가 있으며 기업의 체질에 맞는 특허관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특허관리를 출원관리만으로 한정시켜 출원이 없으면 필요없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특허관리는 기업의 성장에 직접영향을 주는 중요한 것이다. 최근 日本에 있어서의 기업경영과 특허관리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羅

即効性 없어 輕視경향

吉

기업경영의 방침에 직결된 특허관리 업무를 행하는 것은 기업의 종류, 규모의 크고 작은 것에 관계없이 기업의 영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것임은 잘 알려져 있다.

煥

또한 기업의 특징을 살린 독자적인 新技術, 제품의 개발은 기업발전의 기초가 되는것은

말할 것도 없다.

기술개발의 중요성은 비교적 인식이 잘 되어있어 지역산업에 있어서도 기술개발을 기업 경영의 전략으로 하지 않는 기업은 드물다.

그러나 특허관리를 경영관리의 하나로 조직적인 운용을 하고 있는 기업은 그다지 많지 않다.

원래 특허제도는 새로이 창조된 기술을 공개하는 대가로 발명자에게 배타적인 독점권을 주어 보호하려는 것이 주 목적이다.

그 독점권은 개인 기업의大小를 불문하고 합법적으로 평등하게 주어진다.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기업은 이 특허제도를 이용, 발명한 기술을 권리로서의 보호를 요구하고 주어진 독점을 이익보호의 수단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개된 특허정보를 기업경영의 자료로서 다양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허관리는 기업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관리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지역산업에서도 이것은 마찬가지다. 특히 기업의 체질에 알맞는 특허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특허관리는 우발적인 발명의 출원 권리문제, 발생후의 처리 등 최소한의 관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원인은 지역산업의 역사 규모, 기술개발 등 여러 가지 점으로 생각할 수 있다.

때로는 특허관리를 출원관리로 한정짓고 출원이 없으면 필요없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특히 관리가 기업의 흥망성쇠에 직접 관계가 있고 중요한 경영관리의 하나로 평가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大企業에 비해 資本力, 勞動力 등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산업은 자연히 한도가 있으나 기업의 業種, 체질에 적응한 특허 관리를 계속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그것이 하

나의 독립된 관리인 것을 강조하고 싶다.

또한 특히관리는 다른 관리에 비교해서 표과가 곧바로 數量的으로 나타나지 않아 輕視되고 있는 것도 있다.

그러나 특허정보가 法改正보다 최신의 기술정보로서의 가치가 현저하게 높아지고 있다. 기업이 관련하는 기술분야의 진보, 발전을 항상 감시하는 것은 기업경영의 필수적인 수단으로 소기업이라 하더라도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지역산업에 있어서도 그중에는 독자적인 특허관리를 연구해서 경영전략으로 활용, 성공한 사례도 있다. 그 원인의 하나는 기업경영자가, 특허관리의 중요성을 인정, 필요한 노력과 경비의 투자를 아끼지 않은 때문이기도 하다.

지역산업의 특허관리의 문제는 특허관리의 경영관리로서의 가치를 인정, 기본방침을 확립, 기업내에 적당한 조직을 가짐으로써 비롯된다.

司法·情報 두가지 業務

특허관리의 목적은 창조한 기술성과를 출원·특허권을 취득하는 것과 그 운용관리가 주목적이며 동시에 특허정보를 경영관리의 자료로 관리하는 것도 목적의 하나이다. 따라서 출원관리의 司法的인 업무와 특허정보관리가 주된 업무가 된다.

특허정보 관리는 특허출원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특허정보는 기업의 경영전략을 비롯 연구·기획·판매 등에 이용하는 목적으로 행해진다. 특히 진보가 빠른 새로운 기술분야에서는 경영자료로서의 특허정보 관리가 重要視되고 있다.

원래 특허정보는 권리정보로 독점권의 기술

내용· 권리범위, 所在, 소유자등을 아는 것과 함께 기술정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기술정보로 보았을 때 그 내용의 수준은 높고 실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좋은 정보이다. 그 가치는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으나 정비된 연구조직을 가진것이 적다. 지역산업에 있어서는 보다 가치가 높은 정보이다. 이 조사는 간단히 연구자의 참고문헌으로만이 아니고 널리 기업경영의 자료로 가치가 있으며 가까운 實利를 가져오는 것이 많다.

신제품의 개발, 기술개발의 연구를 시작할 때 기술문헌으로 과거의 특허명세서를 조사, 이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고 있어 말할 것도 없다.

새로 발행되는 특허공보는 새로운 기술정보라고 할 수 있다.

그 내용은 일부를 제하고 현재 최고의 수준이다. 거기서는 기업이 관리하는 기술분야의 현재의 수준과 함께 앞으로의 발전방향이 판가름난다. 또한 같은 종류의 기업 경영전략도 물어서 알수 있다.

이때에는 제품의 새로운 분야에의 전개도豫知된다.

또한 특정의 主題에 대해 특허정보를 추구해서 조사해가면 기술발전의 역사적인 흐름을 알 수 있어 기술발전의 예측도 가능하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기업경영의 적극적인 퍽적으로 이용되어 성과가 기대된다.

또한 새로운 기술의 출현에 따라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급속한 退化, 신제품에 의한 自社상품 생명의 급격한 쇠퇴를 예측, 방위하는데 유용하다.

이것은 전통적인 산업이 많은 지역산업에 있어서 특히 가치있는 것으로 기업의 제품, 기술과 관련있는 분야의 특허출원감시는 특히 중요하다.

研究·投資 重複안되게

기업이 새로이 개발연구 또는 공업화를 기획할 때 그 제품, 제조기술에 관계있는 제3자의 특허의 有無에 대해 있으면 특허권의 권리범위 효력등에 대해 상세히 조사한다. 그것은 重複연구,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서이며 계획 실시후 제3자의 특허출현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장애를 막기 위해서이다.

他社의 특허관계에서 개발연구 도중에 계획변경의 필요성이 나오거나 그 특허의 라이센스를 얻지 않으면 실시할 수 없게 되는 것도 있다. 때문에 개발방침의 결정을 비롯 특허정보의 조사, 제공이 필요하다.

최근 日本에서는 특허의 개방이 차차 선을 보여 특허권이 적극적으로 상품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른바 死藏특허뿐 아니라 현재 이익을 올리고 있는 특허에 대해서도 고려되고 있어 앞으로는 상품으로 시장의 형성까지 기대되는 실정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有償이지만 널리 외부의 우수한 연구성과를 기업경영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허 개방은 기업경영의 전략에 큰 영향이 예상된다. 기술이高度化됨에 따라 新技術의 개발에는 풍부한 연구비, 많은 우수한 연구자가 필요되어 왔다. 지역산업에서도 새기술의 개발이 경영전략에 필수적인 조건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지역산업에 있어서의 특허개방의 의의는 다시 검토할 가치가 있다.

개방된 특허의 적극적인 이용은 지역산업에 시 중요한 전략이 된다. 거기에는 개방된 또는 개방이 기대되는 특허의 조사에서 특허권의 기술내용· 권리범위· 실시에 따른 경제적인 이익까지 상세하게 조사 검토할 필요가 생긴다.

특허관리의 방법은 목적·업종·규모·출원 전수등에 따라 다르다. 일정한 형태는 없으나 중소기업의 특허관리에 문제가 있다.

특허관리는 전문적인 기술지식과 함께 최소한의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특수한 인재가 필요하다. 연구시설을 가진 대기업에 있어서는 연구성과를 보호하는 일부터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인재가 있다. 지역 산업에서는 이러한 불리한 조건은 크게 하나의 문제가 된다. 그러나 특허관리 업무가 운데 司法的 업무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지도, 조언이 쉽게 얻어질 수 있어 위탁할 수 있다. 따라서 특허정보 관리에 대해서는 기업내에서 찾기는 어렵지 않다. 보통 특허문제를 습득하는데는 특허 출원에서부터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은 기회이다.

必要的 情報만을 管理

산업부문별로나 또는 발행되는 각종 정보량은 방대해 지역 산업에서는 이같이 많은 양의 정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정보이용의 목적에 따라서 정보의 선별이 행해진다. 선출된 필요한 정보만을 기업내에서 관리한다. 그밖에 정보가 필요할 때는 社外에 요구하는 방법을 취한다. 이 방법에 따르면 업종에도 따르지만 일반적으로 지역 산업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까지 적게 할 수 있다.

선택의 기준은 여러 가지로 생각된다. 기업의 기술영역, 연구중인 분야·장래 진출을 지향하고 있는 분야, 또는 同種기업의 출원, 상품분야 등 정보의 사용목적에 따라 기업독자의 기준이 정해진다.

이 선별을 행할 경우 담당자의 선택방법이 중요하다. 특허관리의 성격으로 보아 가능하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술자, 또는 그와 가까운 인재가 바람직하다. 간단히 특허 담당

자인 까닭에 젊은 기술자에 의해 행해질 때 정확한 판단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기술부문의 책임자가 이 작업을 행하고 선별함과 동시에, 또다시 그것에 대해 제조기술, 연구개발, 상품분야, 소유하는 특허권, 출원 특허에 관련 있는 것, 기술의 진보, 새상품의 개발에 주목하는 것을 선별한다.

다음으로 연구기획 등의 관계부문에 들려 최후로 특허 담당자에게 분류 축적하는 방법이 성과를 올리고 있다.

필요한 정보의 양은 기업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다지 많지 않을 때는 선별한 정보만을 구입,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 특허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協會등의 외부기관에 출장, 거기서 선별, 필요한 정보만을 구입하는 방법도 행해지고 있다.

이 방법에 의하면 불필요한 방대한 양을 기업에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에 따른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특허관리의 방법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

권리정보로 특허권 존재의 有無, 권리범위의 확인 등을 조사할 때는 보다 전문적인 조사가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지역 산업에서는 기업 자신이 특허정보의 완전한 정리, 축적, 완벽한 조사를 행하는 것은 무리이며 외부에 의존하는 일이 많다.

정보는 행동에 따라 처음으로 가치가 생긴다. 이러한 정보가 기업 경영에 이용되어 특허 정보 관리의 목적이 달성된다. 여기에는 분류, 축적된 정보가 각부문에 적절히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점은 기업 규모가 크지 않는 한 특허 담당자의 적극적인 활동만 있으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그보다도 관계자 특허 경영부문, 기술부문의 특허에 관한 이해와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